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체계 개선(안 제4조제3항, 안 제6조의2, 안 제10조의9)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의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생산현황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열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8)

국회 등이 제출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및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절차를 구체화함

다. 전직 대통령 열람제도 개선(안 제10조의3, 안 제10조의4, 안 제10조의5, 안 제10조의6, 안 제10조의7)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의 사본·복제물 등에 대하여 제공범위, 제공방식, 관리대책 등을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전직 대통령 유고 시 대리인 등의 선정절차와 열람 범위, 열람 방법 등을 규정하며 전직 대통령의 열람을 위하여 별도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개선(안 제11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재분류 등의 금지와 서고, 전산실 등의 출입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등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및 원활한 이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마.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책임성·전문성 강화(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7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 등 대통령기록관리 업무 전반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28. ~ 2021. 2. 6.) 예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으로부터 생산현황을 통보받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7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대통령기록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을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 경호업무”를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로,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대통령기록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대통령기록관”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유출기록물의 회수 방법 및 절차)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출된 대통령기록

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을 따른다.

1. 유출 대통령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문서로 회수 통보

2. 보존상자 포장 등 기록물의 훼손 방지 조치

제9조제2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대통령기록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5호 중 “대통령”을 “대통령 또는 대리인 등”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제구역에 보관하여야 하며 열람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제출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열람 후 열람내역을 열람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기관의 장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 열람대장 사본을 제출하고, 상호 직원 입회하에 반출된 사본 또는 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중전의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중전의 제10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3(전직 대통령의 방문 열람) ①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밖에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두거나 필요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전직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열람하려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게 열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는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시스템으로 열람
2.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는 대통령기록물은 사본
· 복제물 등으로 열람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이 열람한 대통령기록물 사본·복제물 등을 열람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① 전직 대통령은

법 제18조제1항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을 위하여 사저(私邸) 또는 사무실 중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한 곳에 열람장비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용 회선 및 열람 전용 개인용 컴퓨터나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에 필요한 장비(이하 “열람장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장비의 관리, 대리인의 지정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직 대통령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열람장비에 대한 불법 접근 차단, 서버 침해 방지, 사용자 식별 및 인증 강화 등 대통령기록물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사본·복제물의 제공) ① 전직 대통령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제10조의3제1항 또는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

기록물을 열람한 이후 사본·복제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사본·복제물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물의 사본·복제물 등의 제작 대상, 제작 기간, 제공 방법, 이용기간, 관리 방안 등을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본·복제물 등의 제작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유형별 사본·복제물 등의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 등의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지 않는 기록물은 사본·복제물·인화물·출력물·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제공
2.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기록물은 파일을 복제하여 매체에 저장하거나 사본·출력물로 제공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게 제공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복제물 등이 반납된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전직 대통령 유고 시 대리인 등의 선정 방법과 절차) ①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및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대리인 등”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추천한 대리인 등을 추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그 결과를 문서로 가족과 선정된 대리인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전직 대통령 유고 시 대리인 등의 열람 범위 및 열람 방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가안보, 국민경제 등 국가적 중대한 사안으로 긴급하게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해당 기록물 이외에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본·복제물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승인 하에 제공받을 수 있다.

② 대리인 등이 제공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복제물 등에 대한 관리 절차는 제10조의5를 준용한다.

제10조의8(전직 대통령에 의한 지정해제) ①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의

2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및 해제사유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접수한 경우 2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결과를 해당 전직 대통령에게 문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결정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

터 10일의 범위에서 결정 통지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9(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보좌, 경호, 자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범위, 열람장소, 열람기간, 열람할 수 있는 사람 등을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법 제20조의2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재분류 등의 금지 요청
2. 서고, 전산실 등 기록물 생산·관리 장소 접근제한 및 출입통제 강화 요구
3.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목록의 작성 및 제출 요구
4.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지원계획 수립 및 통지

제13조제1항제1호 중 “최소 3천 제곱미터, 최대”를 “최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전년도에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①----- ----- ----- ----- ----- <u>대통령기록관</u> ----- ----- ----- ----- ----- ----- --.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으로부터 생산현황을 통보받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u>
제5조(이관 시기) ① ~ ⑥ (생 략) ⑦ <u>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u>	제5조(이관 시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그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6조(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①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받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시기의 연장 여부 및 이관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 대통령기록관 -----
-----.

제6조(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①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 대통령기록물 -----

----- 대통령기록관 -----

-----.

②-----
----- 대통령기록관 -----

-----.

제6조의2(유출기록물의 회수 방법 및 절차)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을 회수하는 경

	<u>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을 따른다.</u> <u>1. 유출 대통령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문서로 회수 통보</u> <u>2. 보존상자 포장 등 기록물의 훼손 방지 조치</u>
제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① (생략) ②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첨부된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대통령기록관</u>-----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 ~ ③ (생략)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8조에 따른 전직 <u>대통령</u>의 열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6. · 7. (생략) ⑤ (생략) <u><신설></u>	5. ----- <u>대통령 또는 대리인 등</u>----- -- 6. · 7.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u>제10조의2(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u>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제구역에 보관하여야 하며 열람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제출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열람 후 열람내역을 열람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기관의 장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 열람대장 사본을 제출
--	--

하고, 상호 직원 입회하에 반출된 사본 또는 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전직 대통령의 방문 열람)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하려는 전직 대통령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는 대통령기록물은 대통

제10조의3(전직 대통령의 방문 열람) ①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밖에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두거나 필요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전직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열람하려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게 열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방법은

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시스템
으로 열람

2.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
리하지 아니하는 대통령기록
물은 사본으로 열람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이 열람한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열람 후 즉시 파기하여
야 한다.

제10조의3(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제3항
에 따른 온라인 열람(이하 “온
라인 열람”이라 한다)을 요구하
는 경우에는 전용회선 및 열람
전용 개인용 컴퓨터나 그 밖에
온라인 열람에 필요한 장비(이
하 “열람장비”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
저(私邸) 또는 사무실 중 대통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
리하는 대통령기록물은 대통
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시스템
으로 열람

2.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
리하지 아니하는 대통령기록
물은 사본·복제물 등으로 열
람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이 열람한 대통령기록물
사본·복제물 등을 열람 후 즉
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전직 대통령의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열람) ① 전직
대통령은 법 제18조제1항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을 위하여 사저(私邸) 또는 사
무실 중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한 곳에 열람장
비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용
회선 및 열람 전용 개인용 컴퓨
터나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열람에 필요한 장비(이하

령기록관의 장이 전직 대통령과 협의하여 정한 한 곳으로 한정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장비의 관리, 대리인의 지정 및 그 밖에 온라인 열람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직 대통령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여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열람장비에 대한 불법 접근 차단, 서버 침해 방지, 사용자 식별 및 인증 강화 등 대통령기록물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장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장비의 관리, 대리인의 지정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직 대통령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열람장비에 대한 불법 접근 차단, 서버 침해 방지, 사용자 식별 및 인증 강화 등 대통령기록물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온라인 열람을 한 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이 열람한 해당 기록물의 사본 제공을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5(사본·복제물의 제공)

① 전직 대통령 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제10조의3제1항 또는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이후 사본·복제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사본·복제물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물의 사본·복제물 등의 제작 대상, 제작기간, 제공 방법, 이용기간, 관리 방안 등을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본·복제물 등의 제작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유형별 사본·복제물 등의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도면·사진·필름·테

<신 설>

이프 등의 전자적 형태로 관
리하지 않는 기록물은 사본 ·
복제물 · 인화물 · 출력물 · 전
자파일로 변환하여 제공

2.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기
록물은 파일을 복제하여 매체
에 저장하거나 사본 · 출력물
로 제공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
게 제공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 복제물 등이 반납된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전직 대통령 유고 시
대리인 등의 선정 방법과 절차)

①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법 제
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및 열
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대리인 등”이라 한다)을 추천
할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
이 정하는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추천한 대리인
등을 추천받은 날로부터 15일

<신 설>

<신 설>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그 결과를 문서로 가족과 선정된 대리인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전직 대통령 유고 시 대리인 등의 열람 범위 및 열람 방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가안보, 국민경제 등 국가적 중대한 사안으로 긴급하게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해당 기록물 이외에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본·복제물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승인 하에 제공받을 수 있다.

② 대리인 등이 제공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복제물 등에 대한 관리 절차는 제10조의5를 준용한다.

제10조의8(전직 대통령에 의한 지정해제) ①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의2에 따라 대통령지정

<신 설>

기록물의 보호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및 해제사유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접수한 경우 2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결과를 해당 전직 대통령에게 문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결정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결정 통지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9(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보좌, 경호, 자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제1

	<u>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범위, 열람장소, 열람기간, 열람할 수 있는 사람 등을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1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법 제20조의2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u> <u>1.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재분류 등의 금지 요청</u> <u>2. 서고, 전산실 등 기록물 생산·관리 장소 접근제한 및 출입통제 강화 요구</u> <u>3.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목록의 작성 및 제출 요구</u> <u>4.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지원계획 수립 및 통지</u>
제13조(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제13조(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①----- -----

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총 면적은 <u>최소 3천 제곱미터, 최 대 5천 제곱미터</u> 이내일 것 2.·3. (생략)	-----. 1. ----- ----- <u>최대</u> ----- ----- 2.·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행정기획과	
연 락 처	(044) 211 - 2216